

중국	2015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

1. 통관 일반

- 변경사항 없음

2. 검역 일반

- 상하이출입경검사검역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검사검역 관리방법에 대한 공고 발표
 - 상하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검사검역 감독 관리를 규범화하여,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이출입경검사검역국은 <상하이출입경 검사검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검시검역 관리방법>을 발표한다.

- 첨부 1.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검사검역 비안표
2. 품질성실경영각서
3. 전자상거래 물류 집중적 감독관리장소 검사검역 요구

상하이검사검역국

2015년 6월 11일

* 출처 : 상하이출입경검사검역국(http://www.shciq.gov.cn/xxgk/tzgg/tzgg_746/201506/t20150615_53649.shtml)

* 공고 원문 및 번역내용 첨부 참조

3. 라벨링 일반

- 변경사항 없음

4. 관련 웹사이트 (통관, 검역, 라벨링 등)

- 검역관련 사이트
 - <http://www.aqsiq.gov.cn> (검역총국)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 (검역규정)

II

수입제도 현안

1. 통관 보류, 거부사례

- 해당사항 없음

2.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 사례

- 2015년 4~5월 한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
4월	0307490000	냉동 오징어 입	7,68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1905310000	한미화 오토크렌베리 과자	817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05511000	팔빙수용 통조림	360	포타슘 솔베이트 사용반칙	소각
	2005999990	해남 깍두기	10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05999990	해남(맛김치) 김치	20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900	조미김	21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008993900	조미김	7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008993900	조미김	7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5월	0303390000	냉동 가자미(舌鰻魚)	1,804	제품과 증서 불일치	반품
	0303793000	냉동 병어	250	제품과 증서 불일치	반품
	0303799090	냉동 삼치	21,500	제품과 증서 불일치	반품

3. 기타 사항

- 질점중국 미국사과 수입 검사검역요구에 대한 공고 발표

〈중국품질감독관리검사검역국 2015년 제60호 공고〉

- 중국 전문가가 미국 사과의 유해생물리스크 분석결과 및 산지 현지실사의 기초에서 중미 양국 검사검역부서 협상을 통하여 쌍방은 〈미국 신선사과 대중 식물검역 계획〉을 체결했다. 동 〈계획〉에 의거 정식으로 〈미국 사과식물 수입검사검역요구〉 발표하여 여건에 부합한 미국사과 수입을 허가한다.

* 출처 : 중국품질감독관리검사검역국(2015.06.05.)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5/

○ **질검총국 대만포도 대 중국대륙 수출 검사검역요구에 대한 공고 발표**

〈중국품질감독관리검사검역국 2015년 제68호 공고〉

- 〈해협양안 농산물 검역검사 협력협약〉 틀 안에서 양안 관련 분야가 대만포도 유해생물리스크 분석, 산지 현지실사 및 기술협상을 통해 〈대만포도 대 중국대륙 수출 검사검역 관리규범〉에 대해 협의를 보고, 대만포도 대 중국대륙 수출 자격이 취득되었다. 6월 9일부터 〈대만포도 대 중국대륙 수출 식물검사검역 요구〉에 부합한 대만포도에 대한 중국대륙 수출이 허가된다.

* 해협양안(海峡两岸, 타이완과 대륙 두 양안의 뜻)

* 출처 : 중국품질감독관리검사검역국(2015.06.09)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5/201506/t20150610_442000.htm

<첨부>

상하이출입경검사검역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에 대한 검사검역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상하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규범화하여,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업체(이하 ‘온라인 업체’)는 해외·국내 제품을 인터넷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소매하여 해외직구 물류로 배송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검사검역기관은 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등록, 제품등록, 검역검사, 제품검사, 리스크 모니터링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검사검역기관은 중국질검총국에서 발표하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련문서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업체 및 제품 등록

제5조 상하이항구에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종사하는 온라인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물류 집중적 감독관리 장소를 운영하는 업체(이하 ‘감독관리장소 운영업체’)는 상하이검사검역국에 비안(备案)해야 한다. 비안 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비안표(첨부1), 영업집조, 제품품질안전관리제도 및 품질성신경영각서(첨부2)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업체 일 경우, 중국 국내 업체를 의뢰하여 비안을 해야 되며 품질안전주체책임수권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전자상거래 업체 및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하 ‘전자상거래 플랫폼’) 법에 의거하여 제품품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품질안전심사, 소비자권익보호, 제품품질추적 및 유통추적, 결함제품 리콜 및 보고 등 품질안전관리제도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검사검역과 호흡을 잘 맞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관리한다.

제7조 온라인 쇼핑 보세 수입모식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물류 집중적 감독 관리 장소는 항구 창고저장물류업체 및 검사검역 감사장의 안전위생감독관리요구(첨부3)에 부합해야 한다. 물류창고저장 안전관리 및 제품 유통추적관리 등 제도를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검사검역과 호흡을 잘 맞춰 검사감독을 관리한다.

제8조 온라인 해외직구 소매제품 판매 전에 전자상거래업체 혹은 의뢰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검사검역국에 관련 제품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비안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제품명칭, 브랜드, HS코드, 규격, 원산국, 공급상명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 검사검역기관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블랙리스트에 속한 제품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10조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 안전 정보 및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표기해야 한다.

제3장 신고 및 감사

제11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판매제품은 전부 신고 관리를 실시한다. 제품을 수출입 시 법에 따라 신고, 감사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보세 수입제품을 입국 후 감독 장소 운영업체는 동 전자창고저장관리 시스템을 제품대장에 기입해야 하며 자발 혹은 대행사 의뢰하여 해외직구 제품 오더 신고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온라인 보세 수입제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업체는 제품 거래 전자정보(오더)를 제공해야 하며 결제플랫폼은 결제정보(직불 명세)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출고 전 감독관리장소 운영업체는 전자신고정보(신고단)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전자정보는 상하이전자항구플랫폼으로 검사검역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출입국 제품은 위생검역 혹은 동식물검역 범위에 속할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검역을 실시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검역처리를 감독해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수출제품에 대해서 검사검역기관은 리스크 분석에 기초한 안전감독 샘플링조사 체제를 실시한다. 제3자 검사검역 결과를 체납하여 제품 품질안전 합격을 판정한다. 일방공업제품에 대해서 추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16조 온라인 보세 수입제품에 대해서 검사검역기관은 리스크 분석에 기초한 품질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상응한 제품 국가표준의 안전위생항목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제17조 온라인 보세 수입제품에 대해서 검사검역기관은 제품 출고 전에 임의로 추출하여 제품과 증서를 심사한다. 규정에 부합할 경우, 감독관리장소 운영업체에 통과의 지령을 내린다. 심사내용은 온라인 소매제품의 실물과 등록신고정보 일치여부, 제품포장, 생산번호, 생산기일 등 정보의 일치여부를 포함한다.

제4장 리스크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제18조 검사검역기관이 리스크 모니터링 구조를 구축하여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에 대해 제품 품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및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품 품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은 제품의 안전, 위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전자상거래 모니터링은 전자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추적 및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의무 및 품질성실경영각서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시장 모니터링은 정부기관 경고통보, 언론보도, 국내외 시장반응 및 소비자 신고 등에 대해서 여론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제19조 모니터링 시 제품은 품질안전요구에 미달할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면담, 리스크 통보, 시정통지, 리콜, 반품 혹은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에 위반할 경우, 검사 검역기관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보세 수입모식은 온라인 수입 해외직구 제품의 대량 입국 후 특수 감독관리 구역 내에 집중 보관하여 인터넷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소매하고 개인 물품으로 신고 출고, 택배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영활동이다.

제22조 검사검역기관은 전자상거래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및 제품비안, 신고, 검사 및 리스크 모니터링의 전자화관리를 실현한다.

제23조 국제택배 혹은 우편으로 입국, 수신자가 개인 소비자 인 경우의 제품의 신고, 검역신고 및 검사검역은 중국 관련 택배입국 및 우편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에 따라 이행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발표일 부터 실시한다.

〈중문 원문〉

上海出入境检验检疫局跨境电子商务检验检疫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上海跨境电子商务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促进跨境电子商务发展,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跨境电子商务,是指跨境电子商务经营企业(以下简称“电商企业”)将境外/境内商品通过互联网向国内/国外消费者零售并通过跨境物流运递的经营活动。

第三条 检验检疫机构对跨境电子商务实施企业备案,商品备案,检疫查验,商品核查,风险监测和监督管理,

第四条 检验检疫机构根据国家质检总局关于跨境电子商务相关文件要求实施负面清单管理制度。

第二章 企业和商品备案

第五条 在上海口岸从事跨境电子商务的电商企业、电商平台和电商物流集中监管场所的运营企业(以下简称“监管场所运营企业”)应当向上海检验检疫局备案。备案时应填写跨境电商企业备案表(附件1),并提供营业执照,商品质量安全管理制度和质量诚信经营承诺书(附件2)。电商企业、电商平台为境外企业的,应委托境内企业办理备案手续,并提供质量安全主体责任授权书。

第六条 电商企业和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以下简称“电商平台”)应依法履行产品质量安全主体责任,建立并有效运行质量安全审核,消费者权益保护,商品质量溯源和流向溯源,缺陷产品召回和报告等质量安全管理制

第七条 对于网购保税进口模式,电商物流集中监管场所应符合检验检疫关于口岸仓储物流企业和检验检疫查验场站的安全卫生监管要求(附件3),建立并有效运行物流仓储安全管理和商品流向溯源管理等制度,配合检验检疫机构的查验监管工作。

第八条 跨境电子商务零售商品上架销售前,电商企业或其委托的电商平台应向检验检疫办理相关商品的备案手续。备案时应提供的信息包括:商品名称,品牌,HS编码,规格型号,原产国别,供应商名称等基本信息。

第九条 属于跨境电子商务负面清单内的产品,检验检疫机构不予受理备案。

第十条 电商企业应在相关电子商务网页明示所售商品质量安全相关信息和对消费者的必要告知事项。

第三章 申报和查验

第十一条 跨境电子商务零售商品实施全申报管理。商品进出境时,应依法办理申报,报检手续。

第十二条 网购保税进口商品进境后,监管场所运营企业应在其电子仓储管理系统中建立商品底账,并自行或委托代理企业办理跨境商品订单申报手续。

第十三条 对于网购保税进口商品,电商企业应提交商品交易电子数据(订单),支付平台应提交支付信息数据(支付单),商品出区前,监管场所运营企业应提交电子申报数据(申报单)。以上相关电子数据应通过上海电子口岸平台向检验检疫提交。

第十四条 进出境货物属于卫生检疫或动植物检疫范围的,检验检疫机构依法实施检疫。应当实施检疫处

理的，依法监督实施检疫处理。

第十五条 对于网购出口商品，检验检疫机构实施基于风险分析的质量安全监督抽查机制，通过采信第三方检验检测结果，进行产品质量安全的合格评定；对于一般工业制成品实施事后监管。

第十六条 对于网购保税进口商品，检验检疫机构实施以风险分析为基础的质量安全监管，依据相应产品国家标准的安全卫生项目进行监测。

第十七条 对于网购保税进口商品，检验检疫机构在其出区前实施商品抽批货证核查，符合规定的，向监管场所发运营企业送放行指令，监管场所运营企业凭检验检疫指令放行。核查内容包括电商零售商品的实物与登记申报信息是否一致，电商零售商品包装，生产批号，日期等信息是否完整等。

第四章 风险监测和监督管理

第十八条 检验检疫机构建立风险监测机制，对跨境电子商务实施商品质量安全风险监测，电商监测和市场监测。商品质量安全风险监测是指对商品的安全，卫生，环保等方面存在的风险进行监测的活动。电商监测是指对电商企业，电商平台的相关网页开展跟踪浏览和检视，审查其是否履行法定义务和质量诚信经营承诺。市场监测是指对政府部门警示通报，媒体报道，国内外市场反应和消费者投诉举报信息等开展舆情监测。

第十九条 对于监测发现商品达不到质量安全要求的，检验检疫机构采取约谈，风险通报，通知整改，召回，退运或销毁等措施。

第二十条 电商企业或者电商平台违反检验检疫有关法律法规的，检验检疫机构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行政处罚。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一条 本办法所称网购保税进口模式是指进口跨境电子商务商品整批入境集中存放于特殊监管区域内，然后通过互联网向国内消费者零售并以个人物品申报出区运递至消费者的经营活动。

第二十二条 检验检疫机构建设跨境电子商务信息化管理系统，实现跨境电子商务企业 and 产品备案，申报，查验和风险监测工作的电子化管理。

第二十三条 通过国际快递或邮寄方式进境，收货人为个人消费者的商品，其申报，报检和检验检疫按国家关于进境快件和邮寄物相关检验检疫监管办法执行。

第二十四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实施。